

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

□ 법령명 :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

□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

- 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은 우수무관 활용을 위해 재외무관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1년 단위로 임기 연장 및 단축, 장성급 장교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,
-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(적용범위) 제2항 제5호에 명시된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, 규제심사 비대상임을 확인받음(접수번호 제2026-4733호).

2026. 8. 20.

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무관운영과